

부천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3호
의결 년월일	2008. 9. 10 (제146회)

제안년월일 : 2008. 9. 3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되고,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20306호, 2007. 10. 4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결산검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함.(안 제2조)
- 나. 결산검사위원회는 시의회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, 1명은 부천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함.(안 제3조)
- 다. 결산검사위원회는 비상근으로 하며,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, 필요 시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)
- 라. 시 소속 상근직원 및 시의 결산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와 시의원의 배우자·자녀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음.(안 제5조)

- 다. 위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, 대표 위원은 의원인 위원이 되며,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.(안 제6조)
- 바. 결산검사는 세입·세출의 결산,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에 관하여 검사하되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대신함.(안 제7조)
- 사. 위원은 시장 및 시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.(안 제8조)
- 아. 감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서명하여야 하며,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.(안 제9조)
- 자. 일비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차. 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공무여행을 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함.(안 제12조)

부천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부천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83조에 따라 부천시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.
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위원은 부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부천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 다만, 위원 중에서 1명은 부천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4조(위촉기간)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,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촉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사전에 위임을 받은 대표 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더 늘릴 수 있다.

제5조(선임의 금지 등) ① 의회는 시 소속 상근직원을 위원으로 선임

할 수 없다.

② 시의 결산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와 의원의 배우자·자녀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6조(대표 위원) ① 위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, 대표 위원은 의원인 위원이 된다.

②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,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.

③ 대표 위원에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

1. 세입·세출의 결산
2. 계속비,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
3. 채권 및 채무의 결산
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
5. 시금고의 결산

②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대신한다. 다만, 필요한 때에는 위원이 이를 다시 검사할 수 있다.

제8조(검사 등에 대한 협조) ① 위원은 시장 및 시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과 시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

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 위원에게는 제4조의 위촉기간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.

제11조(일비의 계산) ① 일비지급기간의 계산은 제4조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위촉기간이 끝난 후라 하더라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되는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비를 추가로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일비지급기간에는 위촉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공무여행기간을 포함한다.

제12조(여비의 지급) ① 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공무여행을 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②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구 분	지 급 액
여 비	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1 “여비지급구분표”의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

[별지서식]

<h1>위 축 장</h1>		
○ ○ ○		
<p>부천시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 으로 위촉합니다.</p>		
20 년 월 일		
부천시의회의장		(직인)